

「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채 의원 외 20명

2. 제안이유

-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적용범위,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(안 제4조~제5조)
-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및 지정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착한임대인 지원 및 환수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

○ 부서검토 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